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96
----------	-----

2020. 4. 29.(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0년 4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4월 16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4월 22일

-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가. 제안이유

○ 조례 제정 이후 수 차례의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 (기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심의
 -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로 구성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안 제5조 및 제7조)
 - (구성) 소위원회는 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
 -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용어 수정
 -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3. 검토보고 요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서완석)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조례 제정 이후 수 차례의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안 제2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상세하게 규정함.

- 안 제9조는 위원회 심의 요청 후 관계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0조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사 전문분야 위원이 심의하도록 하고, 사업 시행이 시급한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게 규정하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게 규정함.
- 안 제14조는 심의요청에 따른 회의안건이 한 차례에 한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3. 12.~'20. 4. 2.)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 이후 수 차례의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의 체계 등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없음”

8. 기타필요한사항：“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 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 · 운영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충청북도 또는 관할 시 · 군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충청북도 또는 시 · 군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기술사 · 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술직렬 6급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이나 기술사 · 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소위원회는 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전문분야별로 1명 이상을 선정하되,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부터 제100조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부터 제135조까지의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과에 대한 동일 사안을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전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은 배제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방법 등은 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소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

기술심의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 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심의요청)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하 “심의요 청자”라 한다)은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계 서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심의요청자에게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심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의소집 등) ① 심의위원회등의 회의는 제9조에 따른 심의요청이 있 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심의 위원회등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에게 심 의하게 하여 개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제2조에 따 른 심의사항 중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과 같이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나 수해복구사업 등 사업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 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설명) 심의요청자는 직접 심의위원회등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팀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책임기술인, 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의결) 심의위원회등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심의기간 및 결과통보)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위원회등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자체 없이 심의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자는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등에 알려야 한다.

제15조(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및 청렴의무) ① 심의위원회등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같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이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심의 요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의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수수료) ① 도지사는 심의요청자에게 정해진 심의수수료를 징수 하되, 그 금액은 심의내용 및 실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충청북도 본청
2. 충청북도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출장소
3.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도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② 심의수수료는 심의 후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3.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중앙심의위원회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⑧ 간사와 서기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2.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심의 요청)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자체 없이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 · 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

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이 중앙심의위원회에 제6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29., 2019. 4.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 · 인가 · 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 ·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4.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 ④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시 건설기술연구기관 또는 관계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시 신기술·신공법 등 고난도 기술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술검토 비용 지급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18조(수당 및 여비 등)

② 제11조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5년간)로 함
- 국토교통부 빌간, 설계심의 및 운영표준안(2019.7.) 적용 산출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중 건설 부분의 기술사 임금 적용
- 임금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나. 추계 결과 : 금22,190천원 정도

-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0년에 4,438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2,190천원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begin{aligned}- \text{기술검토비} &= \{(검토일} \times 4/8) + \text{회의소집일수}\} \times \text{기술사노임단가} \\&= \{(10일} \times 4/8) + 1\text{일} \} \times 369,831\text{원} \\&= 2,218,986\text{원} \times 2\text{회} = 4,437,972\text{원}\end{aligned}$$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또는 시·군비

- 조례안 제19조(심의수수료)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요청한 기관이 도 본청 또는 직속기관 등인 경우에는 도비 재원으로 조달을 하고,
- 시·군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시·군에 심의수수료를 징수하여 시·군비로 재원 조달

① 도지사는 심의요청자에게 정해진 심의수수료를 징수하되, 그 금액은 심의내용 및 실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충청북도 본청 또는 소방본부
2. 충청북도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출장소
3.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도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도)	2차년도 (2021년도)	3차년도 (2022년도)	4차년도 (2023년도)	5차년도 (2024년도)	계
세 입						
세 출	4,438	4,438	4,438	4,438	4,438	22,190
기술검토비	4,438	4,438	4,438	4,438	4,438	22,190
재원조달	4,438	4,438	4,438	4,438	4,438	22,19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438	4,438	4,438	4,438	22,190
	세외수입	2,219	2,219	2,219	2,219	11,095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 · 군비						
기 타 (민간 자부담)						